

#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병윤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728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5월 26일

발 의 자: 이병윤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고광민, 김영철,  
김용호, 김원중, 김재진,  
김혜영, 남궁역, 문성호,  
유만희, 윤기섭, 윤종복,  
이봉준, 이상욱, 이종태,  
이종환, 임춘대, 허 · 훈  
의원(18명)

## 1. 제안이유

-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사회(국내 65세 인구 20% 이상)로 진입함에 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반면에, 건설기계조종사자에 대해 불필요한 연령제한이 현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바, 연령제한에 따른 불필요한 관행을 타파하고자,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연령제한금지 규정을 통해 인권 친화도시 서울 실현, 노동 인권과 고용 평등을 제고하며 지속가능한 건설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선도적 조치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연령제한 등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어야 함 (안 제4조제4항 및 제5항)
- 나.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연령제한 해소를 위한 정책에 협조할 수 있어야 함(안 제5조제3항)
- 다. 일률적 연령제한 등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해 시민인권보호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절차는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에 따름 (안 제13조제6항 및 7항)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는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일률적 연령제한 등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⑤ 시는 시 및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일률적 연령제한 등 고용상의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일률적 연령제한으로 인한 고용상 차별의 시정을 위한 시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일률적 연령제한으로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당한 건설기계종사자는

시 인권센터에 그에 관하여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거나 시 시민인권보호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⑦ 일률적 연령제한으로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상담신청, 조사의뢰, 조사방법, 결과통지 등의 절차는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에 따른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시의 책무) ① ~ ③ (생략) <u>&lt;신 설&gt;</u>  <u>&lt;신 설&gt;</u>	제4조(시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시는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일률적 연령제한 등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u>  <u>⑤ 시는 시 및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일률적 연령제한 등 고용상의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u>
제5조(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책무) ①·② (생략) <u>&lt;신 설&gt;</u>	제5조(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일률적 연령제한으로 인한 고용상 차별의 시정을 위한 시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u>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기계종사에 대한 연령제한 금지 규정을 통해 연령제한에 따른 불필요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간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병준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계분석관	김지혜

☎ 02-2180-7952  
e-mail : kjh0123@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